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3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서영석·박해철·이해식

박홍배 • 윤준병 • 박민규

문진석 · 노종면 · 김 윤

김용민 · 윤종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 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 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선포한다"를 "일정 기간 동안 선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포한다"를 "일정 기간 동안 선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지역"을 "시행지역, 시행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대통령이 계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을 변경하기 1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 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대통령이 계엄 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기 1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통령이 계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 시행지역을 변경하기 1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계엄의 선포, 계엄 종류의 변경 및 계엄 시행지역의 변경은 무효로하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엄은 기한이도래한 때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②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	
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u>선포한다</u> .	일정 기간
	<u>동안 선포한다</u> .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③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	
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선포한다</u> .	<u>일정 기간 동안 선포한다</u>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u><삭 제></u>
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u>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u> <u>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u> <u>있다.</u>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 저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이유, 종류, 시행일시, <u>시행지역</u>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하다.

<신 설>

<신 설>

세3조(계엄	선포의	공고)	1 -	
			시행지	역,
<u>시행기간</u>				
		1		- 3

- ②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한 다.
- 제4조의2(계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 통고 후 24시간 이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대통령이 계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을 변경하기 1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대통령이 계엄 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기 12시간 전까지 국회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 화) ① (생략)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 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 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

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 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이 계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 시 행지역을 변경하기 12시간 전 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 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엄의 선포, 계엄 종류의 변경 및 계엄 시행지역의 변경 은 무효로 하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 우 계엄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화) ① (현행과 같음)

다고인정할때에는군사법원의재판권을1개월의범위에서연기할수있다.